

공정거래 자율준수 핸드북

(2025)

뉴스킨코리아(주)



대표이사 메시지

뉴스킨 코리아 가족 여러분,

우리 회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CP는 단순한 법률 준수를 넘어 윤리적인 기업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든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본 핸드북을 숙지하고 CP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킨코리아 대표이사

조지훈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개요

1.1 CP 의 의미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내부 통제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1.2 핵심 8 대 요소

1.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사항을 명확히 인지,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	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 최고경영자는 자율준수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 CP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
3. CP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 관리자 임명 —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조직 내 자율준수 관리자를 임명하고 효과적인 CP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여	4. 자율준수 편람의 제작·활용 —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의 기준과 절차를 포함하여 임직원 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 가능
5.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 교육 실시 — CP 기준과 절차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사항 등에 대해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6. 내부감시체계 구축 — 위법 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된 감시 및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하며, 감시 및 감사 결과는 주기적으로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보고
7.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 법규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 운영 및 직원의 법 위반 행위 발견 시 적극 대응하고 추후 유사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	8. 효과성 평가와 개선 조치 — CP가 효과적으로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CP 기준, 절차, 운영 등에 대한 점검과 평가 등을 실시해 그에 따라 개선 조치를 실시

2. 업무별 유의사항

2.1 다단계판매 관련 유의사항

2.1.1 다단계판매업자의 준수사항

- 다단계판매업자는 사업을 개시할 때 주된 영업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등록해야 합니다.
- 등록사항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소비자 피해보상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며, 변경 시 최소 3개월 이전에 판매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다단계판매원의 청약철회 기간을 계약 후 3개월 이내로 보장해야 하며, 대금 환불 시 일정 비용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 판매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 재화의 거래가격은 160만원 미만으로 제한됩니다.(2025.6.4일부터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예정)

2.1.2 다단계판매업자의 금지사항

- 판매조직의 양도·양수는 불가능하며, 다만 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 재화 등의 판매 계약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주소나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후원수당을 차등 지급하여 특정 판매원을 우대하거나, 하위판매원의 모집을 조건으로 후원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상품권을 판매한 후 다시 매입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다단계판매원이 판매를 강요받거나 불리한 계약 조건을 수락하도록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하위판매원 모집을 위해 소비자에게 허위 소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미성년자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한 모집행위는 금지됩니다.

2.1.3 위반 사례

- A 다단계판매업체는 판매조직을 통째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다가 적발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 B 업체는 신규 판매원에게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허위 광고를 했으나, 해당 조건이 실현 불가능한 것이 밝혀져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 C 업체는 하위판매원 모집을 위해 소비자에게 허위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광고하여 법적 조치를 받았습니다.

2.2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2.2.1 불공정거래행위 개요

- 불공정거래행위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공정거래법에서는 특정한 형태의 거래 또는 사업활동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상대방에게 불공정한 불이익을 강요하는 경우,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2.2 불공정거래행위의 주요 유형

- **거래상 지위남용**: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
- **부당한 거래거절**: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 **불이익 제공**: 특정 기업이나 개인에게 차별적인 조건을 부여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경영간섭**: 계약 상대방의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부당지원행위**: 특정 계열사나 협력업체에 부당한 혜택을 제공하여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2.3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 **경쟁 제한성:** 해당 행위로 인해 시장 내 경쟁 사업자 수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될 경우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 **불공정성:** 특정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타 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경우 위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2.2.3 위반 사례

- A 사는 특정 협력업체에만 낮은 가격으로 원자재를 공급하면서 다른 업체에는 불리한 조건을 부과하였으며,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 B 사는 하도급업체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2.2.4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를 위한 회사의 조치

- **공정한 계약 체결 원칙 준수:** 모든 계약은 공정한 기준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일방적인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 **투명한 거래 절차 도입:** 모든 거래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내부 심의를 통해 거래 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 **내부 신고제도 운영:**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내부 제도를 마련하고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교육 실시:** 불공정거래방지를 위한 사내 교육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직원들이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2.3 표시·광고 시 유의사항

2.3.1 표시·광고의 기본 원칙

- 모든 광고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안 됩니다.

- 허위·과장 광고는 물론,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기만적인 광고도 금지됩니다.
- 광고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3.2 금지되는 광고 행위 유형

- **허위·과장 광고:** 상품의 품질, 성능, 효능을 실제보다 뛰어나게 표현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광고하는 행위.
- **기만적인 광고:**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오해할 소지가 있는 방식으로 광고하는 행위.
- **부당한 비교 광고:** 객관적인 기준 없이 경쟁사의 제품과 비교하여 자사 제품이 우수하다고 강조하는 광고.
- **비방 광고:** 경쟁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강조하여 소비자를 오도하는 광고.
- **보증·추천 광고의 남용:** 실제로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인물(전문가, 소비자 등)을 이용하여 추천·보증을 하는 광고.

2.3.3 표시·광고 위반 사례

- A 사는 자사 제품이 "세계 최고의 품질"이라는 광고를 진행하였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 B 사는 특정 화장품이 "피부를 100% 개선한다"고 광고했으나, 해당 효능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아 허위 광고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 C 사는 "국내 최저가 보장"이라는 문구를 광고했지만, 경쟁사보다 가격이 높은 사례가 발견되어 공정거래법 위반 판정을 받았습니다.

2.3.4 표시·광고 준수를 위한 회사의 조치

- **내부 심사제도 운영:** 광고 제작 전에 주요 광고에 대해 필요시 법무팀의 심사를 거쳐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광고 실증자료 확보:** 광고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시험성적서, 전문가 의견 등)를 보관해야 합니다.

- **표시·광고 관련 교육 실시:** 광고 담당자 및 관련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법 위반을 예방해야 합니다.
- **광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온·오프라인에서 사용되는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항 발생 시 즉각 조치해야 합니다.

2.4 온라인 쇼핑물 관련 유의사항

2.4.1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준수사항

-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사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도메인명 등의 신원정보를 명확히 공개해야 합니다.
- 사업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및 환불 요청을 처리할 의무가 있으며, 소비자의 정당한 계약 해지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광고 및 표시된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거래내역, 표시·광고 자료 등 주요 거래 관련 정보를 최소 6개월 이상 보존해야 합니다.
-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제), 보험,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2.4.2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금지사항

-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 제품의 실제 판매가격을 숨기고 허위 할인율을 표시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 거래 중 소비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 가입, 결제 유도 등의 불공정 행위.
- 소비자의 불만처리를 소홀히 하거나, 환불을 지연시키는 행위.
- 고객 정보(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부당하게 활용하는 행위

2.4.3 전자상거래 관련 위반 사례

- A 사는 할인율을 허위로 표시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가격이 저렴하다고 착각하게 만들었으나, 실제 판매가는 기존 가격과 동일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 B 사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환불을 지연시키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 C 사는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 3 자 마케팅 업체에 제공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2.4.4 전자상거래법 준수를 위한 회사의 조치

- **신원정보 및 거래정보 투명성 강화:** 회사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필수 정보를 명확히 기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합니다.
- **소비자 권리 보호 정책 운영:** 청약철회, 환불 및 교환 절차를 명확히 하며, 소비자 불만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내부 프로세스를 구축합니다.
- **전자상거래 관련 교육 시행:** 전자상거래 담당자 및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법규 준수 교육을 실시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강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불법적인 활용을 방지하는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합니다.

2.5 하도급거래 시 유의사항

2.5.1 하도급거래 개요

-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수리, 시공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의미합니다.
-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2.5.2 하도급법 적용 대상

- 원사업자: 대기업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사업자.
- 수급사업자: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수리, 시공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대기업으로 전환된 업체는 3년간 중소기업으로 인정됩니다.
- 단순 도매·소매업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아니나, '당사가 요구하는 SPEC'에 따라 제조·납품하는 경우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5.3 하도급거래 준수사항

-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가 제조나 시공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서면 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원사업자는 하도급 거래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거래 종료일로부터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는 하도급 대금, 대금 지급 기한, 대금 지급 방식 등 법정 기재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 추가공사가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며, 구두 계약만으로 진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한 경영 간섭을 해서는 안 되며, 수급사업자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을 존중해야 합니다.

2.5.4 하도급거래 금지사항

-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법정 기재 사항을 누락한 서면 계약서를 제공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거나 지급 기한을 일방적으로 연장하는 행위.
-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이를 유용하는 행위.
- 하도급 대금 지급을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행위.
-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한 발주 취소 또는 제품 수령 거부.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영업 전략, 생산 계획, 매출 정보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2.5.5 하도급거래 관련 위반 사례

- A 사는 하도급업체와 구두 계약을 체결한 후, 하도급 대금을 정식 계약서 없이 지급하다가 적발되어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 B 사는 원사업자로서 수급사업자가 투입한 원가 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근거로 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하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 C 사는 하도급업체가 납품한 제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 거부하고, 대금 지급을 지연시켜 법적 조치를 받았습니다.

2.5.6 하도급법 준수를 위한 회사의 조치

- **하도급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내부 감사를 실시하고, 법 위반 요소를 조기에 감지하여 대응합니다.
- **하도급 대금의 적기 지급 보장:** 대금 지급 기한을 철저히 준수하고, 지급 방법을 법적 요건에 맞게 투명하게 운영합니다.
- **하도급업체의 기술 보호:**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지 않으며, 기술 보호를 위한 계약 조항을 포함하여 운영합니다.

3. 공정거래 리스크 예방

3.1 리스크 평가 및 관리

3.1.2 리스크 평가 대상

- 회사의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 관계 법령 위반 가능성.
- 협력업체 및 제3자와의 거래 시 공정거래 법규 위반 가능성.
- 회사 내 공정거래 법령 및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3.1.2 리스크 평가 종류

- 최초 평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리스크 평가.
- 정기 평가: 최초 평가 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리스크 평가.
- 수시 평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실시하는 리스크 평가.
 - 공정거래 관련 법령 개정 또는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컴플라이언스 이슈 발생 시.
 - 신규 사업 기획 시 해당 사업의 공정거래법 준수 여부 검토 필요 시.
 - 기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추가적인 리스크 평가가 필요한 경우.

3.1.3 리스크 평가 절차

- 내부·외부 환경 및 법적 요건을 고려하여 공정거래 리스크를 조사 및 파악.
- 리스크 관리와 관련된 권한과 책임을 각 부서에 할당.
-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과 영향도를 분석하고, 이를 4단계(상, 중, 하, 0)로 구분하여 평가.
- 리스크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조치를 마련하여 실행.
- 평가된 리스크 수준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

3.2 리스크 예방 및 대응 방안

3.2.1 리스크 수준별 관리 기준

- 상위 리스크: 임원 회의를 통한 경영진 승인 후 즉시 개선 조치.
- 중위 리스크: 법무팀 또는 CP 담당부서의 사전 검토 후 가이드라인 제공 및 모니터링 강화.
- 하위 리스크: 자율준수 편람 배포 및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예방 조치 시행.

3.2.2 리스크 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 운영

- 내부 신고제도 운영: 공정거래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익명성을 보장하고, 신고자를 보호.
- 모니터링 및 감사 시스템 강화: 공정거래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정기적인 내부 감사를 시행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
- 정기 교육 실시: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법규 준수 의식을 향상.

3.2.3 리스크 발생 시 대응 절차

- 리스크 발생 즉시 해당 부서에서 법무팀 및 CP 담당 부서에 보고.
- 리스크 원인 분석 및 개선 조치 방안 수립.
- 필요 시 외부 전문가(변호사, 공정거래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 대응 방안 강화.
- 개선 조치 실행 후 효과성을 평가하고, 추가적인 보완 조치 마련.
- 대표이사 및 관련 임원진에게 리스크 대응 결과를 보고하고, 필요 시 프로세스 개선을 추진.

4. 공정거래 위반 시 제재 및 인센티브 제도

4.1 공정거래법 위반 시 제재 조치

-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 사업자에게 위반 행위의 중지, 계약 조항 삭제, 시정 명령 공표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 과징금 부과: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하도급대금의 최대 2배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행위의 중대성, 위반 금액의 비율, 위반 횟수 등에 따라 구체적인 부과 기준율이 적용됩니다.
- 형사적 처벌: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 반복적인 법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 또는 등록 취소 가능.
- 과태료 부과: 청약철회 미이행, 허위 광고 등 위반 사항에 대해 최대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2 인센티브 제도

- 내부 신고자 포상: 공정거래 위반을 신고하여 회사의 리스크를 예방한 임직원에게 인센티브 제공.
- 공정거래 우수 부서 및 직원 포상: 공정거래 준수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부서 및 직원에 대해 연말 평가 시 포상.
- CP 교육 이수자 혜택: 공정거래 교육을 적극 이수한 직원에게 평가 가점 부여.

5. 사내 신고 및 내부제보 방법

5.1 내부제보 제도 개요

- 회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을 예방하고, 위반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내부제보 제도를 운영합니다.
- 내부제보는 임직원이 회사 내 공정거래 위반 행위를 인지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 내부제보자는 익명성이 보장되며, 회사는 제보자의 신분 보호 및 불이익 금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5.2 내부제보 절차

- 제보 접수: 내부제보는 이메일, 서면 또는 전용 신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초기 검토: CP 팀은 접수된 제보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인지 판단합니다.
- 조사 및 대응:
 - 필요 시 관련 부서 및 법무팀과 협력하여 추가 조사를 진행합니다.
 -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조치 및 예방 대책을 수립합니다.
- 제보자 보호:
 -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어떠한 불이익도 가해지지 않습니다.
 - 내부제보자의 업무 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5.3 내부제보자 보호 조치

- 내부제보자의 신원 보호 및 익명 신고 보장.
- 제보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
- 위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처분 감면 가능.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내 내부 신고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직접 보고해야 합니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며,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Q2. CP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CP 교육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자는 인사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수하지 않을 경우 승진 또는 보너스 지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3. 회사의 경쟁사를 부정적으로 언급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A. 객관적인 근거 없이 경쟁사를 비방하는 광고나 발언은 불공정거래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회사에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4. 공정거래법 위반 시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위반 사항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 행정적 제재(과징금, 영업정지), 내부 징계(정직, 해고)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팀 (CP팀)

본 핸드북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CP팀(nsk_cp@nuskin.com)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핸드북은 회사의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참고자료일 뿐이며,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